변 경 대 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부운 용역	모펀드 부운용역	결산	변동성	법 개정
1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H)	-	0	-	-	-
2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-	0	-	-	-
3	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0	-	-	-
4	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0	0	-	-	-
5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ı	0	i	-	-
6	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0	-	-	-
7	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0	-	-	-
8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0	-	-	-
9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0	-	-	-
10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0	-	-	-
11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0	-	-	-
12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0	-	-	-
13	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0	-	-	-
14	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0	-	-	-
15	미래에셋개인전용 MMF1 호(국공채)	-	-	0	0	-
16	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(국공채)	-	-	0	-	-
17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0	0	-
18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-	0	-
19	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0	-
20	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0	0	-
21	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0	0	-
22	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0	0	-
23	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0	-
24	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-	-	0	-
25	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 접형)	-	-	0	0	-
26	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	0

2. 변경 사항:

- 1) 부책임 운용역 변경
- 2)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
- 3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4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5)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3. 효력발생 예정일: 2020년 6월 25일(목)

4. 변경 내용:

1) 부책임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
변경 전	변경 후
이현경(책임), 윤병호(부책임)	이현경(책임), 양병오(부책임)

2)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

[투자설명서]

-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H)
-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

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변경 전	변경 후	
이현경(책임), 김명준(부책임)	이현경(책임), 양병오(부책임)	
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	
변경 전	변경 후
이현경(책임), 김명준(부책임)	이현경(책임), 양병오(부책임)

-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
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

변경 전	변경 후
신재훈(책임), 이현경(책임), 윤병호(부책임)	신재훈(책임), 이현경(책임), 양병오(부책임)

3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개인전용 MMF1 호(국공채)	6	6	0.02	0.02
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1.72	3.3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3	2	14.03	21.68
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3	2	14.28	21.17
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1	18.17	25.86
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5	5	0.64	0.73
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1	17.98	25.71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4	3	7.02	12.74
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1	1	29.55	32.18
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 형)	4	4	5.45	7.58

4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항목 변경 전 변경 후

제 44 조 (집 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의 변경)

- ① <u>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</u>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야 한다.
-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

1~ 3 <생략>

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

1~6 <생략>

<신설>

-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 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 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 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

1~3 <좌동>

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

1~6 <좌동>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 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 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 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 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미래에셋자산운용㈜